

SK스퀘어 보건관리 시행 기준

1. 보건시설

회사는 사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보건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의무실 운영

- ① 사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 운영한다.
- ② 의무실에는 응급처치나 경미한 치료에 필요한 기구 및 약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의무실에서는 사원의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투약 또는 치료의 업무를 행한다.

3.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

- ① 회사는 사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보건담당자를 둔다.
- ② 보건담당자의 인원, 자격 및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4. 정기건강진단

- ① 회사는 사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종합건강진단 (이하 '검진')을 실시한다.
- ② 검진은 전사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진 해당년도 상반기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정기검진의 범위

- ①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과거병력, 작업경력
 - 2.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시진, 촉진, 청진 및 문진)
 - 3. 혈압, 혈당, 요당 및 요단백, 빈혈검사
 - 4. 체중, 시력 및 청력
 - 5. 신장, 색신 및 혈액형 (단, 채용시에 한함)

6. 흉부 엑스선

7. 혈청 GOT 및 GPT, α -GPT, 총콜레스트롤

8. 기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항목

② 상기항목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 2차 검진을 실시한다.

6. 정밀검사

검진결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7. 치료지도

정밀검사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를 지도하여야 한다.

8. 상병자의 판단

검진결과 다음의 질병이 있는 사원은 상병자로 판정하여야 한다.

① 법정전염병

②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

③ 기타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 신장, 간장, 폐 등의 질환

9. 조치

상병자에 대하여는 병세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간외 근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

② 휴직요양

③ 건강유지에 지장이 없는 직무부여

④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10. 재판정

상병자는 병세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검사하여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11. 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기타 건강진단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조사하였던 사원은 그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12. 검진비용

사원의 검진(재검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